

생활관 운영 규정

제정 1986.12. 3	개정 2004. 0. 1
개정 1987. 3. 2	개정 2004.12.15
개정 1989. 5.29	개정 2006. 1. 1
개정 1994. 8.30	개정 2009.10. 1
개정 1998. 1. 1	개정 2010. 2.22
개정 1999. 3. 4	개정 2016. 1. 1
개정 2001. 6.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생활관 등 학생
주거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활관”라 함은 학생주거시설을 통칭하는 의미이나 이 규정
제5조 이하에서 “생활관”이라 함은 미혼 학생을 위한 집단 주거시설을 말한다.

② “대학원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라 함은 기혼학생이 가족과 함께 거주
하는 아파트형 주거시설을 말한다.

③ “본 대학 학생”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별도의 정의가 없는 한 본 대학의 일반
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을 포함하는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④ “생활관실”이라 함은 생활관장 또는 주거시설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⑤ “입사(또는 입주)”라 함은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 절차에 따라 지정된 방(또는
아파트)에 기거하게 됨을 말하며, “퇴사”라 함은 생활관실에 신고 후 절차에 따라
방(또는 아파트)을 비워주게 됨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침) 본 대학 생활관의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1.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적의 주거환경 유지
2. 교육과 연계된 입체적 생활지도
3. 입주자 자율적 운영관리의 극대화

제4조(운영조직) ① 생활관의 운영조직은 생활관장 및 직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② 생활관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생활관실장은 입학학생처장을 보좌하여 본 대학 생활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입·퇴사 및 방배정
2. 생활점검, 별점부여 등 주거지역내 생활지도 업무

제 2 장 생 활 관

제5조(입사자격) ① 본 대학 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다만, 병역특례자는 연구생 등록시 과정을 수료했다라도 학위취득 전까지는 본 대학 학생으로 간주한다.

② 시간제 학생은 상주재학기간에 한하여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다.

③ 생활관에 여유가 있을 경우 본 대학의 교육 또는 연구에 참여하는 타 대학 학생에게도 입사를 허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기타 대학이 인정하는 자는 생활관 수용 여유를 감안하여 입사할 수 있다. (신설: 2010.2.22)

제6조(입사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입사를 금한다.

1. 학칙에 의하여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삭제: 2001.6.1)

3. 전염성 질환자

4. 기타 입학학생처장이 공동생활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입사신청) 생활관 입사희망자는 다음과 같이 생활관실에 입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입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소정의 입사신청서로 신청

2. 재학생 및 복학생: 당해학기 등록 및 복학원신청으로 대체

3. 재학생 중 계절학기 수강자: 계절학기 수강신청시 생활관 사용료 납부 절차로 대체

4. 연구참여학생 등 기타 입사 희망자: 학과 주임교수(또는 소속 부서장)를 거쳐 소정의 협조전 양식으로 신청

제8조(방배정 및 변경) ① 방은 학사·석사·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을 구분하여 입학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증개축, 수용인원의 변화, 운영방침의 변경 등으로 조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재배정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방배정은 예외로 한다.

② 입사자는 임의로 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방배정 변경신청서를 생활관실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기간) ① 과정별 최대사용기간을 둔다. (개정: 2016.1.1.)

② 과정별 최대사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

구 분	학 사 과 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일 반	복수전공			
최대사용기간	9학기	11학기	5학기	10학기	12학기

※ 학기라 함은 학생의 등록학기를 말하며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6.1.1.)

제10조(운영기간) 생활관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설날, 추석 등의 공휴일에는 생활관을 휴관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정규학기 기간만을 운영기간으로 하며 계절학기기간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 절차에 따른다.
2. 대학원과정: 정규 및 계절학기의 구분없이 전기(3월~8월)와 후기(9월~2월)로만 구분 운영한다.
3. 기타 입사자: 월 단위로 운영한다.

제11조(퇴사) ① 학적변동, 계약기간 만료, 입사제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퇴사가 결정된 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사하여야 한다.

② 학사과정 학생은 매학기 생활관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퇴사일 일주일 후까지 처리되지 않은 개인물품은 생활관실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입사자 준수사항 및 징계) ① 사생수칙(별첨)을 준수하고 생활관내 면학시설 유지와 시설물 및 비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시 생활관장은 그에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간 누적관리하며 주요위반 사항 및 벌점부과 내용과 누적벌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생수칙에 따른다.

제13조(삭제)

제14조(사용료) ① 학사과정 학생은 제9조에서 정한 사용기간 동안 매학기 생활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절학기에는 입학년도 및 입사구분에 관계없이 대학원과정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게 별도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

② 대학원과정 학생은 제9조에서 정한 사용기간에 따른 입사기간 중 생활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③ 기타 입사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휴학 등의 사유로 중도 퇴사시에는 월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6.1.1.)

⑤ 본 대학의 공용목적으로 생활관을 사용할 경우 입학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 생활

관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5조(신고의무) 생활관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발견시 지체없이 생활관실에 신고 하여야 한다.

1. 방 동료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위기에 처한 때
2. 화재, 안전, 도난 등의 사고 발생시
3. 시설물의 붕괴, 가스누출 등으로 큰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4. 방 동료가 24시간 이상 행방불명임을 인지했을 때
5. 기타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 3 장 대 학 원 아 파 트

제16조(입주자격) 본 대학 일반대학원에 등록된 기혼의 전일제 학생에 한한다. 다만, 대학에서 승인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세대범위 내에서 아파트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22)(개정: 2016.1.1.)

제17조(입주순위) ① 일반대학원 학생의 입주 우선순위는 일반학생, 군위탁생, 일반위탁생의 순으로 결정하되, 일반학생 및 군위탁생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매학년초 일괄배정시
 - 가. 1순위: 전년도 대기자
 - 나. 2순위: 신규신청 박사과정 학생
 - 다. 3순위: 신규신청 석사과정 학생
 - 라. 2순위 및 3순위 내에서는 부부학생, 취학자녀수, 전체자녀수 및 연장자 순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마. 대학원아파트에 거주하던 본 대학 통합 박사연구원은 퇴사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원아파트에 여유가 있을시 1년 단위로 배정한다.

2. 추후 신청시: 제 1항의 후순위에 신청순으로 추가하여 순위 부여

② 일반위탁생의 입주는 일반학생 및 군위탁생 중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며, 입주순위는 주택소유여부, 연간 급여액, 취학자녀수 및 전체자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일반 대학원 학생 이외 기타학생의 입주순위는 해당 대학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생활관실에서 정한다.

④ 박사급 위촉연구원의 입주순위는 신청순에 따른다.

⑤ 기 입주자의 신분변동으로 인한 자연체류는 허용한다.

제18조(입주신청 및 입주절차) 아파트 입주의 신청 및 입주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정의 입주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가. 신분증명서 : 재학증명서, 입학허가 통지서 또는 위촉연구원 임용신청서 1부.

나. 기혼사실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입증서류 1부

다. 약 제

2. 아파트 배정 통지서 접수
3. 아파트 예치금 납부
4. 생활관운영팀 직원과 함께 현장 답사 후 아파트 인수
5. 아파트 입주

제19조(세대배정) 아파트의 세대배정은 빈 세대 중 추첨에 의해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가족 중 장애자, 고공공포증환자 등이 있어 특별한 배려가 요망되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사용기간) ① 과정별 최대사용기간을 둔다. (개정: 2016.1.1.)

② 과정별 최대사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위촉연구원
최대사용기간	5학기	10학기	12학기	위촉계약기간

※ 학기라 함은 학생의 등록학기를 말하며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6.1.1.)

제21조(입주자 의무) 아파트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는다.
2. 아파트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3. 아파트 내에서 집단 과외교습,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아파트 내에서 가스, 석유 등의 인화성 물질 취급에 유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5. 임의로 세대변경을 하지 않는다.
6. 아파트 내에서 도박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청소, 쓰레기 수거, 방역 등의 아파트 공동작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22조(이용료) ① 아파트 입주자는 매월 소정의 아파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입주자 신분과 입주기간 구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제24조(퇴사처분) 아파트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입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입학학생처장은 그 입주자의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제21조 입주자 의무의 현저한 위반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이나 6개월 이상의 휴학
3. 전염성 질환 발병
4. 생활관 및 대학원아파트의 운영질서의 저해
5. 사용료 체납

6. 기타 공동생활영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25조(퇴사일)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자격 신분종료 10일 이내에 아파트를 퇴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의 갑작스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일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퇴사절차) 아파트의 퇴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퇴사 10일전 생활관실에 퇴사 예정일을 통지한다.
2. 생활관운영팀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점검을 받는다.
3. 정산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환불 받는다.

제 4 장 시 설 및 안 전 관 리

제27조(시설 및 비품의 유지 관리) ① 생활관 또는 아파트 입주자는 사용 중인 시설이나 비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를 즉각 수리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공용 시설 및 비품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공용시설 및 집기류의 전반적 관리는 대학이 하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규모의 파손이나 고장의 수리는 사용자가 한다.

③ 입주자가 고의나 개인적 과실로 공용시설 및 비품을 파손했을 경우 입주자는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 입주자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각 생활관운영팀 등의 비상연락처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책임) 입주자는 화재 및 도난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입주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장 생 활 관 운 영 위 원 회

제30조(생활관운영위원회) 본 대학의 생활관 및 아파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31조(구성 및 소집) ① 위원회는 생활관장을 위원장으로 전직 생활관장, 생활관운영팀장, 학생지원팀장 학부 자치회장, 대학원 자치회장, 대학원아파트 자치회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1.1.)

②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총장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및 대학원 아파트의 입·퇴사 기준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및 대학원 아파트 사용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3. 건물의 신축 또는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4. 생활관 운영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6 장 학 생 자 치 회

제33조(대학원아파트자치회) ① 아파트의 자율관리를 위하여 대학원 아파트 자치회를 둔다.

② 아파트 자치회는 학생입주자로 아파트 각 동별 1명씩의 위원과 위원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

③ 아파트자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생활관자치회) ① 생활관의 자율적 관리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 자치회를 둔다.

② 생활관자치회는 학부 및 대학원장, 집행부, 각 동 1명씩의 동장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생활관자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기 타 사 항

제35조(게스트룸) (삭제: 2009.10.1.)

제36조(학부모 생활관) (삭제: 2009.10.1.)

제37조(상남관) (삭제: 2009.10.1.)

제38조(예치금 과실분의 사용) 아파트 예치금 과실분은 입학학생처장의 승인하에 생활관 및 대학원아파트 자치회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제39조(RC동) RC동(Residential College)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0.1.)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2월 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5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30일부터 개정, 199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개정,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34조 2항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개정,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사생수칙

○ 주요 위반사항 및 별점부과

위반 내용	최대별점
1. 범죄 행위	70점
2. 이성 생활관 및 RC 이성 사용층 무단출입 ⁽¹⁾	70점
3. 인화물질의 반입, 실화	60점
4. 개인 영리목적 행위	50점
5. 공용 비품의 고의적 파손, 외부 반출, 사유화	50점
6. 외부인 (재학생 이외의 모든 사람) 출입 및 투숙 ⁽²⁾	40점
7. 생활관 건물 내 조리실 이외의 공간에서의 취사	20점
8. 생활관 건물 내 (옥상, 계단 및 베란다 포함) 및 건물 5미터 이내에서의 흡연	20점
9. 불허 전기용품의 반입 및 사용 ⁽¹⁾	20점
10. 허가된 전기용품 관리 부주의	20점
11. 침실 내 벽지, 장판, 카펫, 타일 등의 설치 ⁽³⁾	20점
12. 무단 침실 변경 ⁽¹⁾	30점
13. 동물 사육 (곤충/어류 포함) ⁽¹⁾	20점
14. 입, 퇴사 절차 불이행 ⁽¹⁾	10점
15. 생활관운영팀 직원 및 생활관장 지시사항 불이행	10점
16. 규정을 벗어난 침실 구조 변경 ⁽¹⁾	5점
17. 생활관자치회 및 동민회 자체 규정 위반 행위 ⁽³⁾	15점
18. 복도에 빨래 등의 개인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기타 생활관의 청결 및 안전한 관리에 반하는 행위,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	25점
19. 생활관 지역 내에 학기당 10일 이상 주차하는 개인 차량의 교내 povis 미등록, 사생차량 등록증 미부착 및 주차 질서 위반 행위 ⁽⁴⁾	20점, 주차 질서 위반시 차량 견인, 견인비 입금 거부 시 50점 추가
20. 생활관 구역 내 생활관 미허가 포교 행위 및 포교 규정 위반 행위 ⁽⁵⁾	20점
21. RC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규정 위반 행위 ⁽⁶⁾	70점
22. 추가 생활관 예치금 미납 시 ⁽⁷⁾ 삭제	30점

(1) 개인 또는 그룹별 사전요청이 있을 시 생활관장 심사 및 허가로 별점부과 면제 가능한 사항.

- (2) 퇴사자/휴학생 등 학교에 소속된 자는 생활관운영팀의 허가 하에 1박 가능.
- (3) 동민회 재적 2/3의 구체적인 사항을 의결 후 생활관장 심사 및 허가로 매학기 단위로 별점 부과 예외 또는 자체 관리가 동별로 가능한 사항.
- (4) 2008년 2학기부터 생활관 구역 내에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생활관운영팀에 차량 등록증사본 및 등록 신청서를 해당 사항 발생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생활관 운영팀이 발행하는 사생차량 등록증은 차량 전면 유리 운전석 쪽 하단에 부착해야 한다. 주차 질서 위반 차량은 체육관 뒤 주차장으로 견인할 수 있으며 견인비는 위반 사생이 부담한다. 견인된 차량은 생활관실에 공지하며 견인 시 발생한 차량과손에 대해서 학교는 책임지지 않는다. 견인 공지 이후 지정한 날짜 이내에 견인비를 입금하지 않을시 50점의 별점이 추가 부과된다.
- (5) 사생의 생활관 구역 내의 2인 이상 대상 포교 행위는 생활관운영팀에 구체적인 일정과 인원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1주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활동 할 수 있다. 특히 생활관 건물 내의 포교를 위해서는 방문을 원하는 사생실문 앞 및 해당 생활관 동 출입구에 포교활동 4일 이전에 A3 용지 이상 크기의 활동계획서를 게시하여야 하며 방문을 허락한 사생실에 한하여서만 포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 (6) RC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부가적인 사생수칙은 생활관장 심의 후 일반 사생수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7) (삭제: 2016.1.1.)

○ 누적 별점 및 징계 내용

누적별점	징계내용
10점 이상	매 5점당 생활관장이 정하는 교내 봉사 2시간
20점 이상	학부모 및 지도 교수 통보
30점 이상	다음 정규 학기 한 학기 퇴사
50점 이상	다음 정규 학기 두 학기 퇴사
70점 이상	즉시 영구퇴사 및 학사 징계위원회 회부